

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2 . 15 .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
나. 회부일자 : 1998. 12 . 29 .

다. 상정일자 : 1998. 12. 29 . 제62회평창군의회(정기회)
제2차 본회의

2. 제 안 이 유

-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,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단축하고
- 나. 종전에는 "형사사건을 기소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" 를 이후에는 "휴직을 명할 수 있다"로 개정
- 다.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,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.
- 라. 휴직기간은 병역법에 의한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.

4.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5급이상 61에서 60세로, 6급이하 58세에서 57세로 '98.9.19일 개정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조정하고,
- 현행 휴직제도에 운영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임
- 기타 자구 및 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